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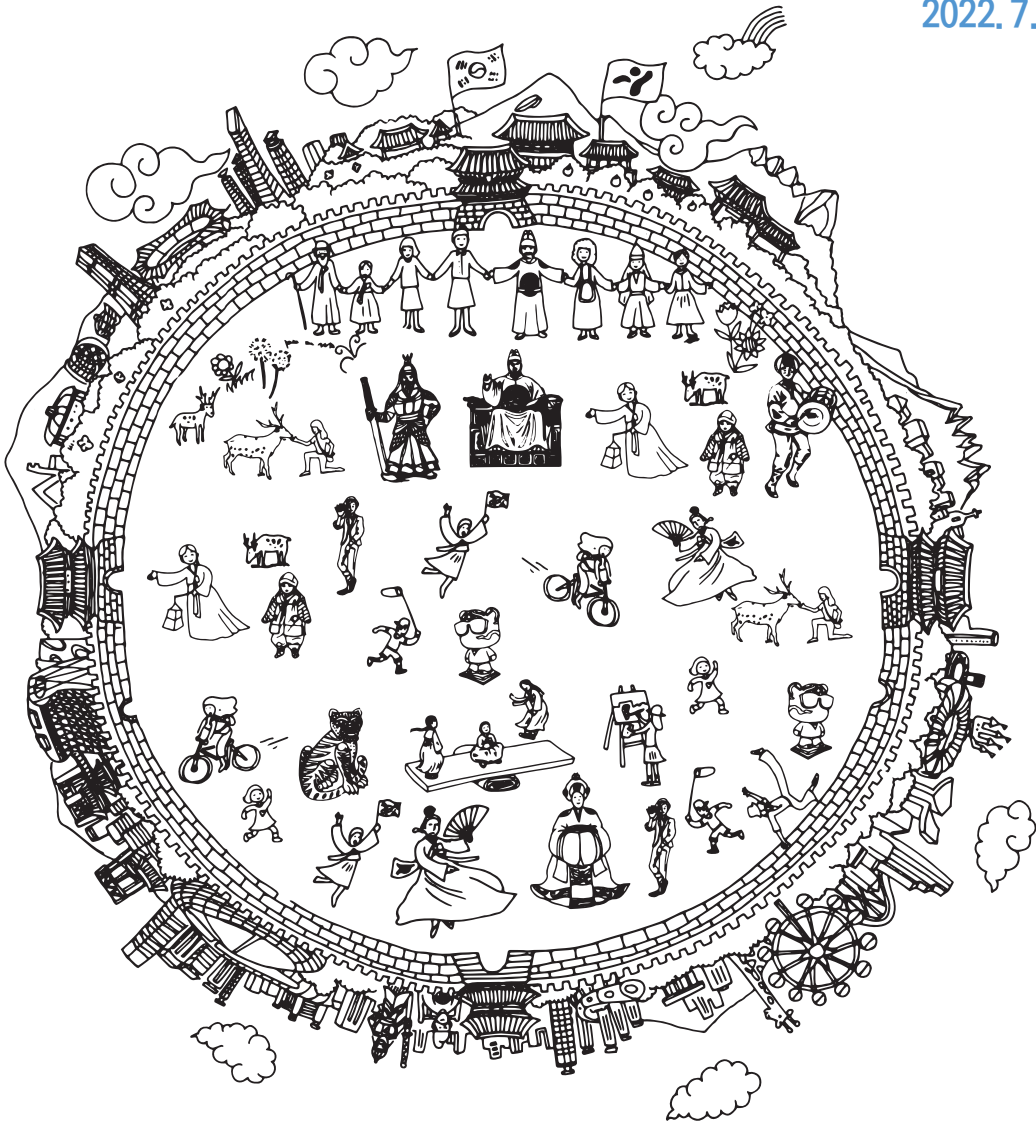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97호
2022. 7. 22.(금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4490호	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2
제4491호	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5

자치법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490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7월 22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민생특보, 정무수석, 정책수석을 두며, 민생특보, 정무수석, 정책수석은” 을 “민생소통특보, 정무특보, 정책특보를 두며, 민생소통특보, 정무특보, 정책특보는” 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문화시설추진단·문화정책과·문화예술과·디자인정책과·역사문화재과·한양도성도감·박물관과·문화시설과를” 를 “문화정책과·문화예술과·디자인정책과·역사문화재과·한양도성도감·박물관과·문화시설과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,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” 를 “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”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제7항제4호 중 “문서접수·배부 및 청원배부·관리에 관한 사항” 을 “문서접수·배부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로” 를 “교수 또는 부교수로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조교수를 미래혁신원 부원장에 겸보할 수 있다.

제28조제3항 중 “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.” 를 “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조교수도 겸보할 수 있다.” 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「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」” 를 “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 로, 같은 항 제2호 “산업경영연구소” 를 “공학연구원” 으로, “법학연구소” 를 “도시과학빅데이터·AI연구원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그 외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연구지원부·식품의약품부·질병연구부·물환경연구부·생활환경연구부·동물위생시험소·강남농수산물검사소·강북농수산물검사소”를 “운영기획부·식품의약품부·질병연구부·물환경연구부·생활환경연구부·동물위생시험소·강남농수산물검사소·강북농수산물검사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구지원부장은”을 “운영기획부장은”으로 한다.

제42조 중 “연구지원부”를 “운영기획부”로 한다.

제43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 검사 및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미생물에 관한 시험·검사 및 연구
19. 의약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·연구에 관한 사항

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,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, 제6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렙토스피라”를 “쯔쯔가무시증”으로 하고,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세균, 바이러스 등 미생물 검사, 연구
13. 신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 조사연구·평가에 관한 사항

제49조제5호 중 “강북지역유통”을 “유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농산물의”를 “농수산물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부적합 한약재, 생약제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

제142조제4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청원 접수,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
12. 청원심의회 구성·운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에 관한 규정)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미래혁신원 부원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, 인사운영 변경사항을 반영하며, 청원 업무 관련 사무분장과 기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정비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(제3조 제2항)

－ 보좌기관의 명칭 변경

· 민생특보, 정무수석, 정책수석 → 민생소통특보, 정무특보, 정책특보

나.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(제14조)

－ 존속기한 : ' 21. 8. 19. ~ ' 22. 8. 18.(1년)

※ 최초설치 : ' 16. 8. 19.

다. 「청원법」 전부개정·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(제16조 및 제142조) -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내 '청원 총괄' 에 관한 사항 신설

－ 정보공개정책과 내 '청원 배부·관리' 사무 삭제

라.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보직 검토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등 조문 정비(제27조 및 제28조, 제39조)

－ 미래혁신원장·부원장 및 대학본부 5개 부처장 검토대상 중 '조교수' 삭제 - 부설연구 기관 설립근거를 시행규칙 → 학칙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조문정비

마. 보건환경연구원 하부조직 명칭변경, 부서간 업무이관 등 사무분장 정비(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9조)

－ '연구지원부 → 운영기획부' 명칭변경

－ 식품·의약품 미생물의 시험·검사 업무를 질병연구부 → 식품의약부로 이관

－ 질병연구부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사무분장 문구 정비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491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7월 22일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 계	11,702	4,714	395	1,160	5,229	204
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일반직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691	4,657	386	396	5,050	202
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3급 소계란, 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급 소계	17	8		1	8	
부이사관	17	8		1	8	

같은 표 4급 소계란, 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 소계	255	155	19	8	66	7
서기관	103	76	9	7	8	3

같은 표 5급 소계란, 행정관, 공업관, 수의관, 간호관, 보건관, 방송통신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급 소계	1,459	983	49	57	329	41
행정	676	497	45	24	74	36
공업	64	35			28	1
수의	7	6			1	
간호	18	12			6	
보건	12	12				
방송통신	21	18		1	2	

같은 표 6급 소계란, 행정란, 공업란, 간호란, 보건란, 방송통신란, 통신운영란, 사육운영란, 사무 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급 소계	3,514	1,869	142	105	1,300	98
행정	1,341	867	115	39	251	69
공업	344	109	6	4	223	2
간호	124	10			114	
보건	21	21				
방송통신	53	30	2	4	17	

통신운영	15	6	1	2	6	
사육운영	5				5	
사무운영	23	7	1	1	13	1

같은 표 7급 소계란, 행정란, 전산란, 공업란, 수의란, 보건란, 시설란, 시설관리란, 농업또는농지란, 전기운영란, 기계운영란,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급 소계	3,456	1,390	118	146	1,750	52
행정	1,291	719	87	59	387	39
전산	143	85	5	10	42	1
공업	425	33	5	12	373	2
수의	10	6			4	
보건	22	20			2	
시설	534	225	2	5	294	8
시설관리	11	4			7	
농업또는농지	2				2	
전기운영	46	3			43	
기계운영	68	5	1		62	

사육운영	2				2	
------	---	--	--	--	---	--

같은 표 8급 소계란, 행정란, 전산란, 녹지란, 방송통신란, 농업또는녹지란, 통신운영란, 전기운영란, 기계운영란, 농림운영란,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급 소계	1,234	177	50	70	934	3
행정	157	30	16	16	93	2

전산	20	5		5	10	
----	----	---	--	---	----	--

녹지	21			1	20	
----	----	--	--	---	----	--

방송통신	18	4		7	7	
------	----	---	--	---	---	--

농업또는녹지	8				8	
--------	---	--	--	--	---	--

통신운영	3	1			2	
------	---	---	--	--	---	--

전기운영	38	1	1		36	
------	----	---	---	--	----	--

기계운영	86	2	2	1	81	
------	----	---	---	---	----	--

농림운영	8			1	7	
------	---	--	--	---	---	--

사무운영	152	49	13	18	71	1
--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	---

같은 표 9급 소계란, 행정란, 전산란, 방송통신란, 시설관리란, 농업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전기운영란을 삭제한다.

9급 소계	581	8	3	4	566	
행정	30	1	1	1	27	
전산	3				3	
방송통신	4	1		2	1	
시설관리	320	1		1	318	
농업또는복지	19				19	
전기운영	〈 삭 제 〉					

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문경력관 소계	129	27	4	4	94	
----------	-----	----	---	---	----	--

같은 표 나군 소계란과 나군 소계란 아래의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군 소계	63	23	4	4	32	
동물사육	13				13	

같은 표 다군 소계란과 다군 소계란 아래의 동물사육란, 고압가스안전관리란, 고압전기안전관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군 소계	62				62	
동물사육	27				27	

고압가스 안전관리	15				15	
고압전기 안전관리	19				19	

같은 표 연구관 소계란과 연구관 소계란 아래의 수의연구관, 보건연구관, 환경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관 소계	65	2		38	25	
--------	----	---	--	----	----	--

수의연구	2			2		
보건연구	16			16		
환경연구	14			14		

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과 연구사 소계란 아래의 수의연구사, 보건연구사, 환경연구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사 소계	340	25		161	154	
--------	-----	----	--	-----	-----	--

보건연구	108	2		98	8	
환경연구	76	1		60	15	
수의연구	3			1	2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,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법정인력 증원,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,138명에서 19,139명으로 1명 증원하고, 그 외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(3급 △1)

－ 본청 3급 △1명

※ 존속기한 : ' 21. 8. 19. ~ ' 22. 8. 18.(1년) / 최초설치 : ' 16. 8. 19.

나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(' 22. 4. 20.)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(4급 +1, 6급 +1)

－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(110명 → 112명)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

▶ (4급 +1)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

▶ (6급 +1)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

다.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(6명)

－ 사육운영 6급 △1, 사육운영7급 △1, 농업또는농지7급 △2, 농업또는농지8급 △1, 농업또는농지9급 △1 → 전문경력관 나군(동물사육)+4, 전문경력관 다군(동물사육)+2

라.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(퇴직, 공로연수 등)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한 직렬·직급간 정원조정(51명)

－ 사무운영·기계운영·통신운영·농림운영 등 6급이하 △51 → 행정·시설관리·방송통신·농지 등 6급이하 +51

마. 행정수요 증가분야에의 대응을 위한 직렬·직급간 정원 조정(41명)

－ 행정·공업·보건·간호·방송통신·수의 등 6급이하 △23 → 5급 +23

－ 환경연구사·보건연구사·수의연구사 각 △1 → 환경연구관·보건연구관·수의연구관 각 +1

－ 전산8급 △14 → 전산7급 +14

－ 전문경력관 다군(고압전기) △1 → 다군(고압가스) +1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